

문서번호	공원녹지과-2233
결재일자	2015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시농업담당	공원녹지과장	안전건설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지애	이동환	장용수	곽병한	김병환	02/05 김영배
협 조	기획예산과장		이용식		
	규제개혁담당		김용환		
	주무관		김하연		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」 일부 개정 계획



안전건설교통국
(공원녹지과)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」 일부 개정 계획

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1. 4. 4. 제정된 「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‘도시농업위원회’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농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도시농업 시책을 구현하고 생태적 마을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(도시농업위원회)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
(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)

II 개정사유

- 도시농업 전문가와 역량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·활동을 통한 도시농업 시책 운영 활성화
- 민·관 수평적 파트너십 및 생태적 마을민주주의 실현

III 개정내용

-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(안 제4조)

당 초	개 정(안)
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<u>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<u>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
<p>③ <u>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 제24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
□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제5조 ~ 제9조)

○ 제5조(위원회 구성)

제①항 위원은 **7명이상 11명 이내**(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)

제②항 위원장은 **부구청장**, 부위원장은 **위원중에서 호선**

제③항 위원은 **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**

제1호 **성북구의회의 의원 1명**

제2호 **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**

제3호 **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**

제4호 **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**

제5호 **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**

제④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**2년**으로 하되 **한 차례 연임**이 가능,
구의회의원·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함

제⑤항 위원회의 **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**

○ 제6조(위원장의 직무)

○ 제7조(회의)

제①항 회의는 **위원장이 소집**

제②항 **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**으로 의결

○ 제8조(위원의 해촉)

제1호 위원 스스로 사임

제2호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

제3호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

제4호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

○ 제9조(수당)

IV **추진 일정**

2015. 2. 기본 방침 수립

2015. 2. 영향평가 의뢰 및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

○ 부패영향평가, 인권영향평가(감사담당관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

○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(마을담당관)

2015. 2.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(20일 간)

2015. 3. 법제심사 요청(기획예산과)

2015. 3. 확정방침 수립

2015. 3.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

2015. 3. 구 의회 상정(제233회 임시회)

2015. 4. 공포 · 시행

- 붙임 1. 제안이유서 1부
2. 일부개정조례안 1부
3. 신구조문 대비표 1부
4. 관련 법령 1부
5. 현행 조례 1부
6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부. 끝.